

#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동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76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5월 28일

발 의 자 : 이동현 의원(1명)

찬 성 자 : 권수정, 김기덕, 김인호,  
김제리, 김태수, 김평남,  
김희걸, 박기재, 박상구,  
서윤기, 송아량, 양민규,  
이영실, 이정인, 이태성,  
임종국, 장상기, 전석기,  
최 선,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의원(22명)

## 1. 제안이유

- 최근 금융투자가 보편화되자 실제로 주식, 가상자산 등 금융상품 투자를 시도하는 청소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이와 함께 청소년 및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출, 유사투자자문업의 불법 영업행위, 보이스피싱 등 금융 분야에서의 피해가 증대되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 체계적인 금융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임.
- 이에 청소년들이 금융소비자로서의 금융역량을 향상하여 다양한 금융사기 및 금융사고의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금융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의 금융교육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교육”이란 금융에 대한 지식과 건전한 금융역량을 향상시키며 금융사고·금융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금융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금융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융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
2. 금융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금융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금융교육 표준교안 마련)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교육에 관한 교원용 지도안 및 학생용 워크북 등이 포함된 금융교육 표준교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시범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교육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시범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원연수 지원)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융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2021051400000010

##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이동현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원동아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05.14.

회신일 : 2021.05.25.

내용문의 : 02-2180-7953

###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5조(금융교육 표준교안 마련), 제6조(시범학교 지정·운영), 제7조(교원연수 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단, 같은 조례안 제8조(위탁)는 서울시교육청이 기 추진하고 있으며, 제9조(협력체계 구축)는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비용추계 제외(엑셀파일 첨부)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5조(금융교육 표준교안 마련), 제6조(시범학교 지정·운영), 제7조(교원연수 지원), 제8조(위탁)에 해당](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260,760천원(연평균 52,152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260,760천원으로 연평균 52,152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안 제5조(금융교육 표준교안 마련) 비용은 서울시교육청이 기 추진하고 있는 이와 유사한 사업인 중등교육과 '사회적경제교육자료보급' 2021년 사업예산 6,260천원을 준용하여 추계함

- 안 제6조(시범학교 지정·운영) 비용은 서울시교육청이 기 추진하고 있는 이와 유사한 사업인 초등교육과 '연구시범학교운영' 2021년 사업예산 17,912천원을 준용하여 추계함

- 안 제7조(교원연수 지원) 비용은 서울시교육청이 기 추진하고 있는 이와 유사한 사업인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과학교원연수' 세부사업인 '교과전문성신장연수' 2021년 사업예산 27,980천원을 준용하여 추계함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260,760천원(연평균 52,152천원)

$$\begin{aligned}
 - \text{총비용} &= \text{금융교육 표준교안 비용} + \text{시범학교 지정·운영 비용} + \text{교원연수 지원 비용} \\
 &= 31,300\text{천원} + 89,560\text{천원} + 139,900\text{천원} \\
 &= 260,760\text{천원}
 \end{aligned}$$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금융교육 표준교안 (안제5조)	6,260	6,260	6,260	6,260	6,260	31,300
	시범학교 지정·운영 (안제6조)	17,912	17,912	17,912	17,912	17,912	89,560
	교원연수 지원 (안제7조)	27,980	27,980	27,980	27,980	27,980	139,900
	소계(b)	52,152	52,152	52,152	52,152	52,152	260,760
	총비용(b-a)	52,152	52,152	52,152	52,152	52,152	260,760

○ 금융교육 표준교안 비용 ≙ 31,300천원

$$- \text{산출방식} \sum_{i=1}^5 (\text{금융교육표준교안비용})_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

- 연간 금융교육 표준교안 마련 비용 ≙ 6,260천원

-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교육자료 보급'의 2021년사업예산(6,260천원) 준용

사업내용: 인성교육, 경제교육, 진로/직업 교육, 민주시민 교육 등을 통합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개발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학교협동조합 운영과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및 서비스 구매를 실천할 수 있는 이론적, 철학적 기반 마련

○ 시범학교 지정·운영 비용 ≙ 89,56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시범학교지정운영비용)<sub>i</sub>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

- 연간 시범학교 지정·운영 비용 ≙ 17,912천원

-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시범학교운영' 2021년 사업예산 17,912천원  
사업내용: 초·중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연구학교 지정 운영을 통한 교육과정 연계방안 모색,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연구시범학교 등 선정심의회 운영 등

○ 교원연수 지원 비용 ≙ 139,9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교원연수비용)<sub>i</sub>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

- 연간 교원연수 지원 비용 ≙ 27,980천원

-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과학교원연수' 세부사업인 '교과전문성신장연수' 2021년 사업예산 27,980천원을 준용  
사업내용: 초·중등 과학과 교사를 대상으로 전공이론, 전공실습, 수업평가 실습과정 제공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주    무    관      원동아

☎ 02-2180-7953

e-mail : dongyal@seoul.go.kr